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09.0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8.2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8.24.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9.09.0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조 주 연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,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 이라 한다)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

-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)
-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.
- 2)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.(안 제4조)
 - 3)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함.(안 제10조)
 - 4)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제1항)
 - 5)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1조제2항)
 - 6)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.(안 제12조제1항)
 - 7)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2조제2항)
 - 8)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바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음.(안 제13조제1항)
 - 9)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음.(안 제13조 제2항)
 - 10)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14조)
 - 11)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음.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, 급속한 고령화,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과 저임금의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.

0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현금급여 지원보다 이들이 자립·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.

0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7년 7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을 제정·시행하였고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육성지원,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 2009년 8월말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52개 업체로 이중 서울시는 57개, 마포구는 8개 업체가 인증업체로 등록되어 있음.

0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,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

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·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